

2. 都市計劃施設基準에 關한 規則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交通部 公告 第1996-291號 1996. 11. 1

주요골자

가. “일반폐기물처리시설”을 “폐기물처리시설(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)”로, “특정폐기물처리시설”을 “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”로 변경함.

나.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내에서는 동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의하도록 함.

개정이유

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분류체계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.

주택회보